

2025 달라지는 사업·제도

POLICY CHANGE FOR 2025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

2025 달라지는 사업·제도 CONTENTS



I. 행정·안전 분야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06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	07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제도기간 종료	08
가로주택정비사업 총수 제한 조례 완화	10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 확대	11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통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12
119 출동알림서비스 구축	13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14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15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16
화재알림설비 설치 시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	17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및 신뢰성 강화	18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9
도민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20

II . 일자리 · 경제 분야

강원국방벤처센터, 방산 분야 지원사업 전격 추진	2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2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26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확대	27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유형 확대	28
생활임금 인상	29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	30
문화예술인 · 단체 지원사업 2종 신설	31

III . 복지 · 보건 분야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 연령 확대	34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지원(3 →2자녀) 확대	35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3 →2자녀) 확대	36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확대	37
기초연금 지급 확대	38
경로당 냉 ·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확대	39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확대	40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41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	42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 보존 등 지원	43
주거급여 지원금 인상	44
평생교육바우처 운영	45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운영	46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47
유 · 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48



IV. 농업·축산·어업 분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52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시행	53
정부 판로지원 전용물 연계 연중 마케팅 지원 강화	54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고도화 추진	55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선정 우선순위 개편	56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57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시행 유예	58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 확대 추진	59
탄도 생산 국내산 조사로 구입 운송비 지원	60
축산물 이력제 유통관리 강화	61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단가 증액	62

V. 산림·환경 분야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기간 변경	66
산림버섯 톱밥 배지 등 지원 대상자 확대	67
임산물생산 기반조성(굴착기) 지원기준 현실화	68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수종전환 방제비용 지원	69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등 변경	70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71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72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협업사업 추진	73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시행	74
과수화상병 진단체계 개편 및 사전예방 강화	75
종합검정실 상시운영 확대	76

I. 행정·안전 분야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06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	07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08
가로주택정비사업 총수 제한 조례 완화	10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 확대	11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통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12
119 출동알림서비스 구축	13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14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15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16
화재알림설비 설치 시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	17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및 신뢰성 강화	18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9
도민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20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정책기획관실 송무팀 (☎249-2228)

◦ 어떤 내용인가요?

-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도민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을 최대 50만 원 내에서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인용 시 40만 원 지원(사정재결 포함) ▪ 집행정지 인용결정 시 10만 원 지원* * 본 심판이 전부인용된 경우에 한함

◦ 누가 신청하나요?

-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 전부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청구서와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월 5일부터 시행되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

자치법령과 법령기획팀 (☎249-4736)

○ 행정협의회란?

- ▶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 협의기구

○ 무엇이 달라지나요?

- ▶ '24년까지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필요성에 따라 임의로 운영되던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 **2025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근거한 법적 기구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로 공식 출범**
 - ※ 운영규약 제정, 각 시·도 의회 보고, 관보 고시, 행정안전부 보고 완료
- ▶ **공동사업 예산 편성, 행정협의회 운영 체계 확립, 국회 정부 공동 대응 등 유용**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특별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대응력 강화
- ▶ 특별자치시도 공동사업 기획 운영 및 예산 편성 가능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민국 內 4개 특별자치시도(강원, 제주, 세종, 전북)가 상호 연대·협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제도기간 종료

토지와 부동산주소팀 (☎249-2356)

◦ 어떤 사업인가요?

- ▶ 주택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제도
 - * 도내 7개 시 지역 대상(군(郡)지역 제외)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 2021. 6. 1. 제도 시행('25.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운영 중)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기간* 내 과태료 미부과 * 2021. 6. 1. ~ 2025.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기간 종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주택 임대차 정보 공개 확대로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
- ▶ 주택 임대차 정보 확보로 시장 동향 파악 등 정책 수립 활용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택 소재 주민센터 방문 신고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https://rtms.molit.go.kr/>)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제도기간이 종료('25.5.31.)됨에 따라, '25.6.1. 이후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25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신고 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 대상

아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 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제재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조례 완화

건축과 주택팀 (☎249-3462)

◦ 어떤 사업인가요?

-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 완화 배경?

-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정비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어 개정을 통해 사업추진 활성화 도모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삭 제>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층수 제한 완화로 인하여 가로주택정비의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에 대한 조례 규정이 완화됩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 확대

건축과 주택팀 (☎249-2842)

◦ 어떤 사업인가요?

- ▶ 공동주택 준공 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여 하자 분쟁 사전예방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품질점검 대상 확대 배경?

- ▶ 소형건설사가 주로 시공하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하자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그간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확대 시행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대상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소규모 단지에 대한 시공 품질 향상 및 하자 분쟁을 최소화하고, 입주민 주거 만족도 향상 기여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이 보다 확대됩니다.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통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접경지역과 교류협력팀 (☎249-3072)

◦ 어떤 사업인가요?

- ▶ **상시운영 교육·체험 프로그램(10:00~17:00)** *(휴관) 매주 일, 월요일 및 공휴일
 - 전시체험존(통일열차 OX퀴즈, 사진촬영 등), 통일정보자료실, 북카페 등
- ▶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
 - 공직자 통일교육 및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쿠키·케익 만들기, DIY체험 등)
 - 미래세대를 위한 어린이 프로그램(체험존 활동 및 DIY만들기 등)
 - 통일 브런치 콘서트(영사특강) 및 남북한 음식 만들기
 - 문학·아이디어 공모전 및 통일영화 상영회 등
- ▶ **현장에서 즐기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 통일핫스팟 로컬투어* (25명, 1일 코스)
 - * (예) A시군 출발 → 〇〇〇박물관 → 〇〇관광 → 〇〇체험 → A시군 도착
 - 지역별 축제·행사 개최시 체험부스 운영 및 문화예술 공연 등
 -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1주년 기념행사(10. 25.)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누리집(www.unipluscenter.go.kr) 에서 신청 및 접수
 - * (프로그램 안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밴드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연중 운영(프로그램별 누리집 별도 공지)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는 통일에 대한
도민 참여기회 확대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해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 됩니다.



119 출동알림서비스 구축

종합상황실 정보통신팀 (☎249-5118)

◦ 어떤 사업인가요?

- ▶ 119신고자의 휴대폰으로 출동대 정보가 포함된 링크를 보내 신고자가 출동차량 위치와 예상 도착시간 확인
- ▶ 출동대 도착 전 119신고자에게 응급상황 대처요령 이미지 부가 제공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가 출동차량 정보를 119신고 접수요원 또는 출동대원과의 유선통화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신고자 휴대폰으로 출동차량 위치·예상 도착시간 및 이미지로 제공되는 응급상황 대처요령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전송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긴급상황에서 신고자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출동대의 이동 경로를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119신고 시 신고자 휴대폰으로 링크 자동 전송.
- 링크 클릭 시 출동차량 위치 실시간 제공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 ◆ 신고자에게 출동상황 실시간 전송으로 긴급상황에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 신고 상황에 맞는 대처요령 이미지를 제공하여 사고 초기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예방안전과 안전기술팀 (☎249-5333)

◦ 어떤 법령인가요?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현행	개정
규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소방청
소화기 비치	▪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강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참고자료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에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4. 12. 1.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
- ※ 기존의 등록 차량은 소급 미적용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예방안전과 안전기술팀 (☎249-5333)

◦ 어떤 법령인가요?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현행	개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대상물 (주택, <u>다세대·연립주택</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소방대상물 (<u>다세대·연립주택</u> 추가)
적용 소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용소방시설 (<u>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 (소화기,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별표2]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대상 -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

※ ‘소방대상물’ 과 ‘특정소방대상물’ 의 구분

- **소방대상물** :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거하여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4. 12. 1. 이후 신축하는 대상물이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 기존의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미적용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를 설치 시 착공신고·감리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예방안전과 안전기술팀 (☎249-5333)

◦ 어떤 법령인가요?

- ▶ 「소방시설공사업법」

◦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5. 1. 30. 이후 시장·군수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주체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새롭게 규정됩니다.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및 신뢰성 강화

예방안전과 안전기술팀 (☎249-5333)

◦ 어떤 법령인가요?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퍼) 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트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덕트 및 반자에 점검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기동장치) 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기동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연구역 인근에 수동기동장치 설치 -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0.8m~1.5m - 기능 : 송풍기, 댐퍼 및 제연경계벽 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확인) 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연설비는 설계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 (건축설비를 포함)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측정 및 조정을 해야 함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4. 10. 1. 이후 신축하는 대상물이나, 증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급 미적용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제연설비의 설치 방법과, 검증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예방안전과 안전기술팀 (☎249-5334)

◦ 어떤 법령인가요?

-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소방청고시 제2024-52호, 2024. 11. 11. 일부개정

◦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조설비) 기준 부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X의3 제1호 마목 및 X의4 제1호 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6조의2」 반도체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면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를 공조설비로 대체 가능 - 미국 SEMI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stitute) - 미국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미국 FM (Factory Mutual) ※ 시행일 : 2025.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 기준 부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제1호 나목 비고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27조의2」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중 다음 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경우 소화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봄 - 미국 SEMI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stitute) ※ 시행일 : 2025. 5. 21.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5. 5. 21.부터 시행됩니다.



반도체 ·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가 달라집니다.

도민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구조구급과 생활안전팀 (☎249-5192)

◦ 어떤 사업인가요?

▶ 4개 시군*에 CPR 전문교육 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형 무인 연습장 구축


* 춘천, 원주, 강릉, 양양('24년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 실적 우수 지역)

-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전문 강사 없이 혼자서도 체험 및 실습 가능

- 다양한 메뉴를 통한 심폐소생술 체험의 흥미 유도 및 반복 학습

※ CPR 동영상 학습, 체험 모드, 평가 모드, 게임 모드 등

구분	내용
본체(키오스크)	터치스크린(43인치) 및 운영프로그램 설치
마네킹 거치대	서 있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수행 가능
마네킹	심폐소생술 직접 수행 / 거치대에 고정
운영물품	마네킹 클리너, 소독 티슈, 발판, 배너 등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 책자를 통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및 영상 안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및 교육에 따른 피드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폐소생술 자세, 압박 속도·깊이 등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으로 정확도 향상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5년 4월부터 운영됩니다.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을 통해 도민 개인의 심폐소생술 능력을 높여,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II. 일자리·경제 분야



강원국방벤처센터, 방산 분야 지원사업 전격 추진	2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25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26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확대	27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유형 확대	28
생활임금 인상	29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	30
문화예술인·단체 지원사업 2종 신설	31

강원국방벤처센터, 방산 분야 지원사업 전격 추진

경제정책과 방위산업팀 (☎249-2722)

◦ 어떤 사업인가요?

- ▶ 방위산업 특성상 **기업 독자적으로 시장진출이 매우 어려움**
- ▶ **도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방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 맞춤형 지원 실시**

- 지원내용

지원 분야	내용
기업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보유기술 활용, 군사장 진출가능 과제 발굴 ▪ 방산 시제품 등 우수과제 개발비 지원
기업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사업 시험평가·인증·지적재산권 등 비용 지원 ▪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마케팅 지원 ▪ 방사청·군·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전문 네트워크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K-방산 성장세에 발맞추어 **도내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영역 확대**
- ▶ 방위산업 진출에 따른 기술개발 절차, 획득 관련 정보제공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방벤처센터 지원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신청 공고에 따른 지원 기업 모집**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

도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249-2757)

◦ 어떤 사업인가요?

- ▶ **자금규모 : 4,000억 원 운용**(’24년 대비 470억 원 확대)
- ▶ **이자지원 · 저금리융자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및 성장기반 마련**
 - 경영안정자금(은행협력자금) : 운전자금, 이차지원 2.0 ~ 3.0%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행협력자금) : 시설자금, 이차지원 2.0%
 - 특수목적자금(도 기금) : 운전 · 시설자금, 고정금리 1.5%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자금 내 자금 유형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규모 : 20억 원 -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규모 : 2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자금 내 자금 유형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규모 : 30억 원 -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규모 : 30억 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육아지원 제도 도입 · 활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직장환경 개선
- ▶ 예측불가한 각종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 강화로 기업 경영안정화 도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신청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 신청방법 : 시군 기업지원 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http://59.29.186.235/hext/main/index.html>



도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 (☎249-3212)

◦ 어떤 사업인가요?

- ▶ 사업대상 : 도내 소상공인
- ▶ 대출조건 :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5년 거치(일시 또는 분할 상환)
-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지원(2%, 2년간), 보증수수료 지원(0.8%, 2년치)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까지)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조성 - 이자 지원 : 2년, 2% - 보증수수료 지원 : 없음 - 보증한도 : 최대 1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이후)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조성 - 이자 지원 : 2년, 2% - 보증수수료 지원 : 0.8%, 2년치 - 보증한도 : 최대 2억 원 ▪ ('25년부터) - 영세 소상공인 우대금리(0.5%)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담보력 부족,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원활히 융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건강한 성장과 활성화 기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신청(스마트폰·PC를 통한 비대면 신청) 및 은행 One-Stop 신청(NH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2월(별도 공고) * 상·하반기 배분 운영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요건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확대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정책팀 (☎249-2778)

◦ 어떤 사업인가요?

- ▶ 청년근로자 10만 원 적립시, 도·시군 + 기업 10만 원 매칭
매월 20만 원(청년 10 + 기업 5 + 도·시군 5), 3년 ⇨ 720만 원 + 이자
- ▶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① 대상연령 : 18세 이상부터 45세 이하
 - ② 거주기준 : 주민등록 기준 도내 거주
 - ③ 근 로 :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로중
 - ④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 (지원연령) 18세 ~ 39세	▪ (지원연령) 18세 ~ 45세
▪ (지원규모) 연간 신규 300명	▪ (지원규모) 연간 신규 600명
▪ (지원방법) 청년 10 + 도(5)·시군(5) 10 = 20만 원	▪ (지원방법) 청년 10 + 기업 5 + 도(2.5)·시군(2.5) 5 = 20만 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누리집(<https://double.gwwell.kr/youth>) 신청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3~4월(도·시군 누리집 별도 공고)



도내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유형 확대

소상공인과 지역공동체팀 (☎249-2206)

◦ 어떤 사업인가요?

- ▶ 사업기간 : 2025. 3 ~ 12월
- ▶ 지원자격 : 주민 10~15인 이상 모여서 결성한 공동체
- ▶ 지원액 : 공동체별 10~20백만 원 이내
-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형 ▪ 문화예술형 ▪ 환경정비형 ▪ 복지봉사형 ▪ 소득사업형 ▪ <u>기획공모사업</u>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특정분야 대상 지원 5개소 (돌봄, 아파트, 안전, 다문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형 ▪ 문화예술형 ▪ 환경정비형 ▪ 복지봉사형 ▪ 소득사업형 ▪ <u>기획공모사업</u>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규모 소액지원 신규사업 진입 4개소 ② 3년내 개화진행 완료 단체로 자립계획이 확실한 단체 선별 지원 2개소 <p>* 발아단계 과소·미운영(시군) 지역에 대한 차별 최소화를 위한 신규 진입 및 지원종료 후 자립지원 단계 신설</p>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
- ▶ 이웃과 단절된 인간관계 회복의 발판 마련과 공동체의식 함양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공모방식 : 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 중간지원조직 홍보
- ▶ (마을공동체 부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고 예정 ('24. 12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진입을 확대하고,
지원이 종료된 마을공동체에 대한
추가 자립 지원을 실시합니다.



생활임금 인상

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 (☎249-2977)

◦ 생활임금이 무엇인가요?

- ▶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
 -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 보완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 시급 11,415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 시급 11,678원(2.3%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 월급(209시간) 2,385,735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 월급(209시간) 2,440,702원

◦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

-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 출자·출연기관 및 도(道)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생활임금은 2025. 1. 1. 부터 2025. 12. 31. 까지 적용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이 2.3% 인상됩니다.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 (☎520-7454)

◦ 어떤 사업인가요?

- ▶ 매출 감소,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 및 내실화를 위한 수요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내 관광사업체 * 영세사업체 우선지원
 - 지원내용 : 법률·경영, 브랜딩, 마케팅, 신제품 등 분야별 컨설팅

구분		지원내용	
컨설팅 분야	법률·경영	인사, 노무	고용·임금, 평가체계, 인사 제도 등
		경영	경영진단 및 사업계획 분석 등
		회계, 세무	예산 및 회계, 재무체계 등
	브랜딩		사업체 브랜딩 및 네이밍, BI디자인 등
	마케팅		SNS 활용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등
	신제품		진단, 개발, 시제품 제작(일키트 등) 등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관광사업체 경영환경 개선 및 안정화, 이에 따른 질 높은 관광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도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2025년 상반기 중 공고 예정. 기간 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관광사업체가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통해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인·단체 지원사업 2종 신설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249-2790)

◦ 어떤 사업인가요?

▶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문화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도내 예술인에게 대출 및 이자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예술관련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지원내용 : 대출지원(1년 거치 2년 상환), 이차보전(연2%, 3년간)

* 용자유형 : 창업·경영자금, 작업실 임차, 예술활동 물품구입 등

* 보증규모 : 개인별 최대 3천만 원 이내(이율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

▶ 예술인 후원매칭 지원

- 문화예술단체의 후원확정금액에 1:1 보조금 매칭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단체등록증을 소지한 예술단체로 후원이 확정된 단체

• 지원내용 : 후원 확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매칭 지원(최소 1백만 원 ~ 최대 10백만 원)

* 후원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감사패 전달, 후원활동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들이 자금을 원활히 융통하여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지원 및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

▶ 후원문화 활성화를 통해 도내 예술단체 자립 역량 강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강원문화재단 누리집(www.gwcf.or.kr) 을 통한 사업 안내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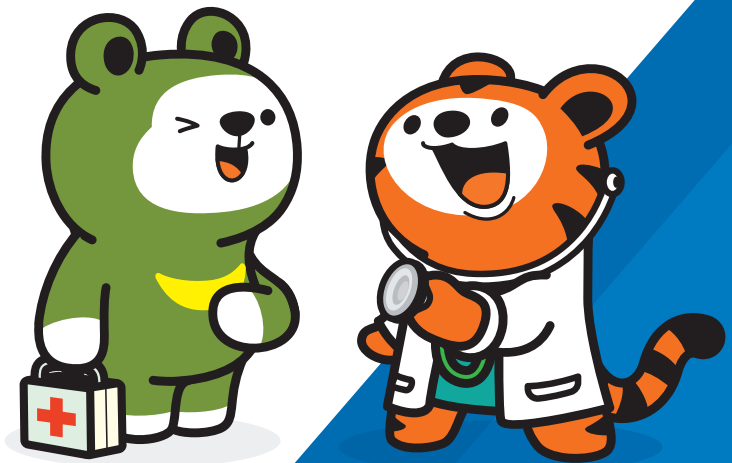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5년 2월 별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도내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위한
 ①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 지원사업,
 ② 후원 매칭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III. 복지·보건 분야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 연령 확대	34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지원(3→2자녀) 확대	35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3→2자녀) 확대	36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확대	37
기초연금 지급 확대	38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확대	39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확대	40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41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	42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43
주거급여 지원금 인상	44
평생교육바우처 운영	45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운영	46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47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48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 연령 확대

복지정책과 육아지원팀 (☎249-2438)

◦ 어떤 사업인가요?

-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 원)
- 신청자격 : 2019. 1. 1. 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2024년)	변 경(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 71개월, 최대 월 50만 원 - 0세 (0 ~ 11개월) 부모급여로 대체 - 1 ~ 3세 (12 ~ 47개월) 월 50만 원 - 4 ~ 5세 (48 ~ 71개월) 월 3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 83개월, 최대 월 50만 원 - 0세 (0 ~ 11개월) 부모급여로 대체 - 1 ~ 3세 (12 ~ 47개월) 월 50만 원 - 4 ~ 5세 (48 ~ 71개월) 월 30만 원 - 6세 (72 ~ 83개월) 월 10만 원

※ '24년 출생아부터는 생후 12개월이 도래하는 첫돌이 속한 달부터 신청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보다 두터운 연령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 조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육아기본수당이 5세에서 6세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지원 (3→2자녀) 확대

복지정책과 육아지원팀 (☎249-2503)

◦ 어떤 사업인가요?

- ▶ 생애 1회, 등록금에 대해 지원, 대학 재학중 100만 원 범위 내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
 - ※ 단,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등에서 학자금을 전액 면제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내 거주하는 24세 이하 셋째아 이상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내 거주하는 24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둘째아의 경우 '25년 신입생부터 적용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다자녀 사회적 우대 강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대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납입증명(확인)서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합니다.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3→2자녀) 확대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249-2504)

◦ 어떤 사업인가요?

- ▶ 학부모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도에 주소를 두고 '25년 신규 입소한 아동*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입소 시, 1회 105천 원 지원
 - * 법정 저소득층·다문화 가족·장애·다자녀 가정 등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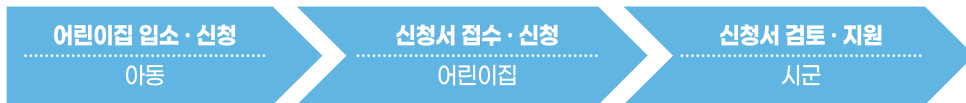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저소득층·다문화가족·장애 가정 아동 및 다자녀 가정의 3자녀 이상 아동 ▪ 어린이집 입소 시, 1회 105천 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저소득층·다문화가족·장애 가정 아동 및 다자녀 가정의 2자녀 이상 아동 ▪ 어린이집 입소 시, 1회 105천 원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어린이집 신규입소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양육 부담 경감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확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249-3697)

◦ 어떤 사업인가요?

- ▶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

◦ 무엇이 달라지나요?

- ▶ 2024년 7개 시군 시행에서 2025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
- ▶ 제공 서비스

기 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돌봄, 가사, 동행(은행, 장보기))	
특화	청·중장년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접수 등), 심리(전문가 상담) 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보호 지원, 소셜 다이닝(교류, 사회참여) 서비스
	중장년	교류증진(소통, 교류) 지원, 건강생활(건강 상담, 운동) 지원 서비스
	청년	신체건강 증진(개인형 맞춤형운동 지원),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249-2677)

◦ 어떤 사업인가요?

- ▶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지원내용 : 월 최대 343,510원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최대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최대 (단독가구) 343,510원 (부부가구) 549,610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으로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2.6% 인상 됩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확대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249-2676)

◦ 어떤 사업인가요?

- ▶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 냉방비 2개월(7~8월), 연 330천 원 *전년도 동일
 - 난방비 5개월(1~3월, 11~12월), 연 2,000천 원
 - 양곡비 12포(1포 53천 원/20kg), 연 628천 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비 5개월(1~3월, 11~12월) 월 370천 원, 연 1,850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비 5개월(1~3월, 11~12월) 월 400천 원, 연 2,000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비 8포(1포 54천 원/20kg) 연 432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비 12포(1포 53천 원/20kg) 연 628천 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지역 어르신들이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및 주 5일 식사제공으로 여가복지 증진 도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해당 시군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경로당별 수요량 파악 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249-2202)

◦ 어떤 사업인가요?

- ▶ 장애아동에게 인지, 의사소통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된 장애미등록 유아 만 6세 미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된 장애미등록 유아 만 9세 미만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장애아동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장애아동 기능 향상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신청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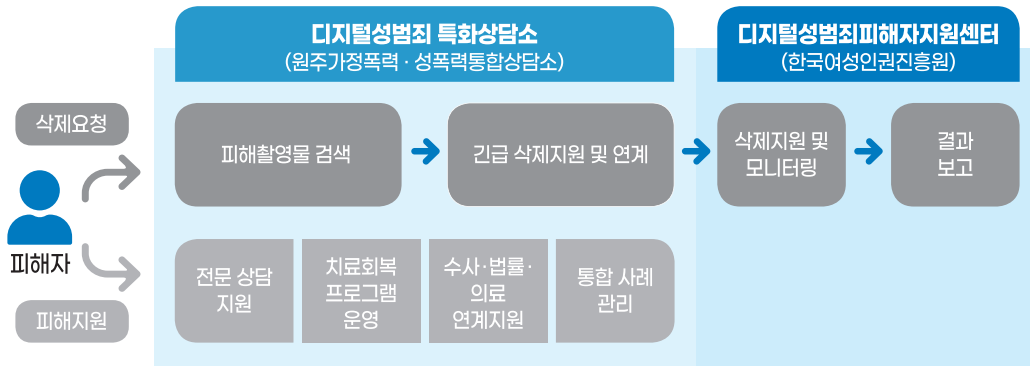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복지팀 (☎249-2510)

◦ 어떤 사업인가요?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의료·무료 법률 연계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다변화된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신속 대응하여 피해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로 신청 ☎ 033-765-1366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

여성청소년가족과 청소년팀 (☎249-2859)

◦ 어떤 사업인가요?

-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청소년 중 다음 사항 모두 해당
 - 19세 이후 퇴소한 자(단, '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과거 3년간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 지원내용 : 청소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 원 지급 (60개월)

◦ 무엇이 달라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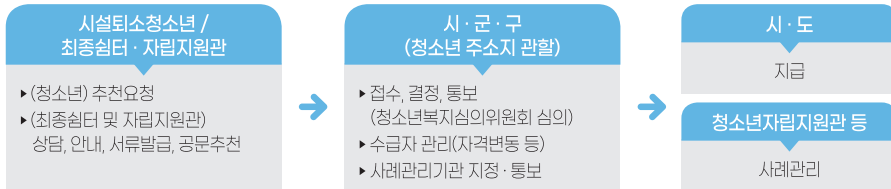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수당 월 40만 원 여성가족부(국비 50%, 도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기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본인이 퇴소한 청소년쉼터에 대상자 추천 요청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합니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공공의료과 응급의료팀 (☎249-2923)

◦ 어떤 사업인가요?

- ▶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 의학적 사유(난소 또는 고환적출술 등)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

지원 대상	난소부분절제술 및 고환적출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자
지원 내용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동결·보존 지원
지원 금액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총 1회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 보존을 지원하여 출산율 증가 기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직접 방문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 보존을 지원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인상

건축과 주거복지팀 (☎249-2384)

◦ 어떤 사업인가요?

- ▶ **근 거**: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 및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 ▶ **사업목적**: 기존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구원 수·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 **지원대상**: 중위소득 48% 이하(1인 1,148천 원/월, 4인 2,926천 원/월)
- ▶ **지원내용**
 - (임차급여) 임차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월 임대료 범위 내, **임차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른 **개보수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기 존	변 경
임차급여	가구원 1인	178천 원	191천 원
	가구원 2인	201천 원	215천 원
	가구원 3인	239천 원	256천 원
	가구원 4인	278천 원	297천 원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457만 원	590만 원
	중보수	849만 원	1,095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1,601만 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방문 신청: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이용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 임차료와 수선비용을 인상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운영

인재육성과 평생교육팀 (☎249-3245)

◦ 어떤 사업인가요?

- ▶ 도내 19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노인 등에게 평생교육강좌 수강료·교재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35만 원
 - * 우수 사용자에게 한해 1회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 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자기계발·자아실현 지원 및 경제적 차이에 따른 평생교육 격차 완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에서 신청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취약계층에게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운영

인재육성과 평생교육팀 (☎249-3245)

◦ 어떤 사업인가요?

- ▶ 도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 교재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35만 원
 - * 우수 사용자에게 한해 1회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 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강화하여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제고하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참여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신청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에게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249-2786)

◦ 어떤 사업인가요?

- ▶ **사업목적**: 문화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
- ▶ **사업대상**: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4만 원
- ▶ **사 용 처**: 전국 가맹점(공연장, 전시관, 영화관, 숙박 관광시설 등)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2024년)	변 경(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연간 13만 원 지원 ▪ 대상자의 90% 지원(선착순, 전국 동일) ▪ 92,549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연간 14만 원 지원 ▪ 대상자의 90% 지원(선착순, 전국 동일) ▪ 92,113명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취약계층의 문화 누리 기회 확대 및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보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문화누리 모바일앱, 전화ARS(1544-3412)로 신청
- * '24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자동 재충전('25. 2. 1.)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문화누리카드는 2025년 2월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간 14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체육과 생활체육팀 (☎249-3325)

◦ 어떤 사업인가요?

- ▶ 소외계층* 유·청소년(만 5~18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월 수강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구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2024년)	변 경(2025년)
▪ 매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매월 10만 5천 원 , 최대 12개월 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유·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을 보장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동량들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 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변경된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을 월 10만 5천 원으로 상향합니다.



POLICY CHANGE FOR 2025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IV. 농업·축산·어업 분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52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시행	53
정부 판로지원 전용몰 연계 연중 마케팅 지원 강화	54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고도화 추진	55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선정 우선순위 개편	56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57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시행 유예	58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 확대 추진	59
타도 생산 국내산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	60
축산물 이력제 유통관리 강화	61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단가 증액	62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정과 농지팀 (☎249-2615)

◦ 어떤 제도인가요?

- ▶ 도시민들의 보다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및 설치 기준 마련(농지법 시행령 개정 '25. 1월)

구분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목적	▪ 농자재 보관, 농작업 중 일시휴식 등	▪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임시숙소 활용 등
주거가능여부	▪ 주거 안됨	▪ 주거 가능(단기)
사용기간	▪ 영구적	▪ 최장12년 (3년단위 연장) + α (지자체 조례)
설치면적	▪ 연면적 20㎡ 이내	▪ 연면적 33㎡ 이내 * 데크·정화조·주차장 설치허용(연면적과 별도)

◦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 ▶ 기존 농막이 쉼터의 면적·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유예기간(3년) 내 쉼터로 전환,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영농활동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농업활동에 불편한 농막 규제를 해소하여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작업 목적의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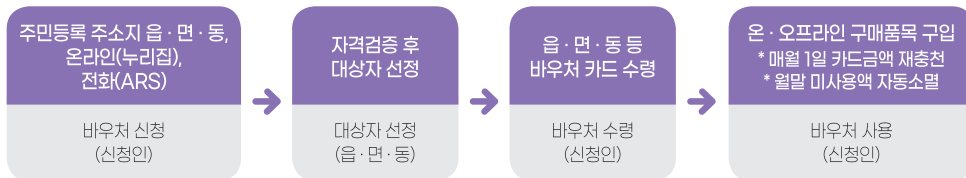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시행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산업팀 (☎249-2716)

◦ 어떤 사업인가요?

- ▶ **사업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 ▶ **사업량** : 2,697가구
- ▶ **지원기간** : '25. 3. ~ 12.(10개월)
- ▶ **지원단가** : 월 4만 원/1인 가구
 - (1인) 4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만 원, (5인) 11.6만 원 등
 - * 가구원 수별 차등, 당월 미사용 잔액 월말 자동 소멸(이월 불가)
- ▶ **지원내용** : 국산 신선농축산물 구입 이용권(농식품 바우처) 지원
 - 지원품목 분류 : ① 국산 채소류, 과일류 ② 국산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 ③ 국산 잡곡류, 두부류
- ▶ **사용처** : 온·오프라인 (농식품부 지정) 사용

◦ 어떻게 신청·사용하나요?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 및 균형 섭취 지원,
양질의 신선 농산물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지원이 '25년부터 확대 추진됩니다.

정부 판로지원 전용몰 연계 연중 마케팅 지원 강화

농산물유통과 농산물마케팅팀 (☎249-2630)

◦ 어떤 사업인가요?

- ▶ **사업명** : '25년 정부 판로지원 전용몰 입점·판매망 구축 지원
- ▶ **사업대상** :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생산자, 농업법인
 - * 기본요건 : 정부 수행기관 oT를 통해 신규 및 재지정 절차 사전 이행 업체 등
 - * 모집공고 : 신규 지정(매년 3월~), 재지정(8월~) / 온라인(<http://foodbiz.or.kr>) 접수
- ▶ **지원기간** : '25. 6. ~ 12.(7개월)
- ▶ **지원조건** : 정부 직접지원(국 100%), 도 신규 지원(도 40%, 시군 60%)
- ▶ **지원혜택**
 - (정부 직접지원 혜택) 정부 전용몰 입점 수수료 인하 (△15~20%), 상세 페이지 제작, 연중 할인쿠폰 지원 등
 - (도비 신규지원 혜택) 정부 전용몰 메인화면 노출 및 배너 광고, 강원 기획 프로모션 지원, 강원 전용몰 구축 등



◦ 어떻게 신청·추진 하나요?

- ▶ ① 신규사업 추진계획 시달 → ② 시군 신청·접수 → ③ 도 평가 → ④ 사업추진
 - 사업설명회 개최(1~2월), 참여업체 선정 및 사업 신청(3~5월), 정부 전용몰 입점·판매망 구축 및 강원 기획 프로모션 추진(6~12월)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정부 판로지원 전용몰 입점·판매망 구축으로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케팅 연중 지원 기반 마련 및 유통·소비시장 교섭력 강화 가능

농공상용합형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도내 생산자, 농업법인 대상으로 정부 판로지원 전용몰 입점·판매망 구축 사업이 '25년부터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고도화 추진

친환경농업과 농산경영팀 (☎249-2647)

◦ 어떤 사업인가요?

-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 ▶ 지원기준 : 논·밭 경지면적에 따라 0.1 ~ 1.5ha이상 7구간으로 차등 지원
- ▶ 지원내용 : 생산단계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 전품목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구간 : 6구간 - 0.1 ~ 1ha(5구간), 1.0ha이상(1구간) * 논 100천 원 ~ 600천 원 * 밭 300천 원 ~ 1,800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구간 : 7구간 - 1.5ha이상(논 700천 원, 밭 2,100천 원) ※ 1 ~ 6구간 기존과 동일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중소농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줍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신청기간 : 2025년 1월 ~ 2월 *시군별 신청기간 상이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도내 농가별 평균 경지면적 1.5ha 감안,
지원구간(1.5ha~) 추가 설정으로 중소농 범위 확대 및
농가경영 안정을 추진합니다. * 지원구간 확대(6→7구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선정 우선순위 개편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249-3561)

◦ 어떤 사업인가요?

-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 지원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지원다가 11월 중 확정)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p>① 녹비작물 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일반농지(시군 자율 결정) <p>②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p>① 녹비작물 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외) →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외) → 일반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p>②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외) →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외)

* 청년농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에 따라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청년농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읍·면·동)으로 사업신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친환경농업인 등 유기농업자재 지원의 사업대상 선정 시 청년농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249-2639)

◦ 어떤 사업인가요?

- ▶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1개월 미만) 대응한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 운영·지원으로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소득 제고
 - 사업운영 : 지자체가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본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 사업규모 : 개소당 90~100백만 원, 지원조건 : 국비 50%, 시군비 50%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준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경작·개간, 농작물의 식재·재배 및 수확 등 농작물 생산과 직접 연관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운영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추가 허용 * 총 근로시간의 30%이내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근로 체류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4, 90일 미만 / E-8, 5개월 + 1~3개월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근로 체류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8, 최대 8개월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최근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계절성이 강한 농작업 특성상 농번기에 안정적인 인력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

◦ 어떤 신청하나요?

- ▶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 공모신청(매년 11월), 대상자 선정(매년 12월)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시행 유예

축산과 축산경영팀 (☎249-2659)

◦ 어떤 제도인가요?

- ▶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 진드기 감염 등 가축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산란계 사육밀도를 확대함

◦ 무엇이 달라지나요?

- ▶ 종계·산란계 마리당 케이지 면적 확대(축산법 개정 '18.9월)

구분	기존	변경
'18년 9월 이전시설 설치농가	▪ (사육면적) 0.05㎡/마리	▪ 0.075㎡/마리
	▪ (시행일) 2025. 9. 1일부터	▪ 2027. 9. 1일부터 * 시설 개선 등 준비기간 확보로 2년간 유예

- ▶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공급감소 우려 완화를 위해 사육 시설 관련 규제 완화
- 계사 건폐율 상향(20% → 60%), 케이지 단수 확대(9단 → 12단)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육면적 확대를 통해 동물복지 및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당초 2025년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2년 유예를 거쳐 **2027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복지 향상 및 닭 진드기 등 가축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마리당 0.05㎡ → 0.075㎡)가 유예됩니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 확대 추진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249-2737)

◦ 어떤 사업인가요?

- ▶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사료 급여 및 분뇨처리 방법 개선 시 저탄소 영농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자
 - 대상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 지원기준: 국비 100%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기존	변경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사료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소저감사료(돼지) : 5천 원/두/년 - 저메탄사료(한육우, 젖소) : 25~50천 원/두/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사료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소저감사료 축종 추가(돼지, 한육우, 산란계) : 돼지(5천 원/두/년), 한육우(10), 산란계(0.5) - 저메탄사료(한육우, 젖소) : 한육우(25천 원/두/년), 젖소(50) ▪ 분뇨처리개선(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교반·강제송풍(한육우, 젖소) : 한육우(1.3천 원/톤/년), 젖소(1.5) - 강제송풍(한육우, 젖소) : 0.5천 원/톤/년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축산현장에 저탄소 영농활동을 장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4년 12월부터 신청·접수하며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 변동 가능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사료 급여 (질소저감사료 한육우, 산란계 축종 추가) 및 분뇨처리 방식개선(신규) 시 저탄소 영농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타도 생산 국내산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

축산과 친환경축산팀 (☎249-2666)

◦ 어떤 사업인가요?

- ▶ 주소지 기준 거리 100km 이상 조사료 주산지(충남·전북·전남 등)에서 조사료를 구입할 경우 운송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조사료 종류는?

- ▶ (지원대상) 한우 사육농가 및 축산 관련 법인
- ▶ (조사료 종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옥수수, 호밀 등 사료작물(벼짚 제외)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전북·전남 등 주산지 조사료 구입비 (사료비 + 운송비) 전액 축산농업인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 조사료 구입비 중 운송비 일부 지원으로 축산농가 부담 완화(보조 1만 원/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물류·인건비 상승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로 인해 변동성이 큰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사업 시행 계획이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 축산부서 및 농업기술센터(축산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리·기후적으로 조사료 재배가 불리한 강원특별자치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축산물 생산비 완화를 위해 운송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축산물 이력제 유통관리 강화

축산과 축산브랜드관리팀 (☎249-2723)

○ 축산물 이력제란 무엇인가요?

- ▶ 축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둔갑 판매 방지로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 이력제 구축 : ('08) 국내산 소 → ('10) 수입쇠고기 → ('14) 국내산 돼지 → ('18) 수입돼지고기
→ ('20) 국내산 가금 및 가금산물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지도·점검 (정기 2회, 그외 수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지도·점검 (정기 4회, 그외 수시 점검) ▪ 위반업소 적발 시 향후 1년간 반복 단속 ▪ 전국 시도 및 유관기관 위반업소 공유로 지도 점검 활용

○ 이력제 점검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 ▶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축산물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해 이력제 의무이행 주체 대상 합동단속(현장점검)

* 이력제 의무이행 주체 :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축산물유통판매업체 등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이력번호 미기재·허위 기재, 수입산 소고기 국내산 둔갑판매 등 축산물 부정 유통을 단속하여 안정적 제도 정착 유도 및 유통 투명성 제고



소고기 부정 유통 근절 등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이력제 지도·점검이 강화됩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단가 증액

내수면자원센터 내수면사업팀 (☎248-6763)

◦ 어떤 사업인가요?

- ▶ 생태계 교란어종의 토속어종 어란 및 치어 대량 포식으로 어족자원 고갈이 심화됨에 따라 생태계 교란 수매로 어족자원 및 수생태계 보호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 교란종 5종 (배스, 블루길, 브라운송어,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 교란종 4종 (배스, 블루길, 브라운송어, 붉은귀거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매단가 5,000원 /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매단가 6,000원 / kg

※ 무용어종 4종(누치, 강준치, 끄리, 왕우렁이)은 수매단가(5,000원 / kg) 동일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단가 증액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및 지속적인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 추진으로 향토어종 자원량 증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시군 내수면사업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어업인이 어로활동으로 포획한 생태계 교란종(배스, 블루길, 브라운송어, 붉은귀거북) 수매단가를 6천 원으로 증액합니다.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V. 산림·환경 분야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기간 변경	66
산림버섯 톱밥 배지 등 지원 대상자 확대	67
임산물생산 기반조성(굴착기) 지원기준 현실화	68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수증전환 방제비용 지원	69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등 변경	70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71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72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협업사업 추진	73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시행	74
과수화상병 진단체계 개편 및 사전예방 강화	75
종합검정실 상시운영 확대	76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기간 변경

산림정책과 산림산업팀 (☎249-2732)

◦ 어떤 사업인가요?

- ▶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마련 사업 (1억 원 미만)
 - 가.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
 - 나.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 라. 임산물상품화지원 마.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 사업대상자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등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 (접수기간) 전년도 1~2월	▪ (접수기간) 전년도 6~7월
▪ (대상자 확정) 당해연도 1월 이후	▪ (대상자 확정) 전년도 11월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보조사업 신청자들의 신청 후 확정까지 시간이 길어져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유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매년 6~7월) * 시군별 심의 必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임산물 생산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소액 보조사업의 신청시기(전년도 1~2월)와 사업자 확정시기(당해연도 1월 이후)가 길어, 신청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



산림버섯 톱밥 배지 등 지원 대상자 확대

산림정책과 산림산업팀 (☎249-2732)

◦ 어떤 사업인가요?

- ▶ 표고버섯 재배경력자에 대한 톱밥 배지 및 배지생산 시설 지원

* 톱밥 배지지원 : 1년 이상 경력자, 생산시설 : 5년 이상 경력 또는 교육받은 생산자단체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톱밥 배지지원) 표고버섯 1년 이상 재배 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톱밥 배지지원) 산림버섯 1년 이상 재배 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 지원) 표고버섯 5년 이상 재배 경력자 또는 생산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 지원) 산림버섯 5년 이상 재배 경력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 : 8시간 이상 집합교육 받은 생산자단체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사업대상자 확대로 다양한 버섯재배 임업인 소득증대 기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매년 6~7월) * 시군별 심의 必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표고버섯으로 한정된 톱밥 배지 및 배지시설 지원을
모든 산림버섯으로 확대합니다.

임산물생산 기반조성(굴착기) 지원기준 현실화

산림정책과 산림산업팀 (☎249-2732)

◦ 어떤 사업인가요?

- ▶ 임산물의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해 굴착기 등 생산장비 지원

* 지원장비 : 굴착기, 4륜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수집기, 동력수확기, 밭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기준) 굴착기 지원 기준 - 수실류 : 15ha - 약용·약초·산나물류 : 10ha -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 5ha - 육림업 : 30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기준) 굴착기 지원 기준 - 수실류 : 15ha - 약용·약초·산나물류 : 10ha * 수실류와 약용·약초·산나물류는 직선거리 30km 이내 면적 합산 가능 ※ 그 외 기준과 동일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지원 면적기준 현실화로 임산물생산 기계장비 지원임업인 확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매년 6~7월) * 시군별 심의 必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중 굴착기의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수종전환 방제비용 지원

산림관리과 산림보호팀 (☎249-3135)

◦ 어떤 사업인가요?

- ▶ 소나무재선충병 반복적 피해발생지역 또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예방 벌채가 필요한 지역의 소나무류를 모두 벌채하여 소나무류 이외의 수종을 조림하는 방법으로,
- ▶ 벌채 산물에 대해 파쇄 또는 훈증 처리를 위한 방제비용 지원과 벌채지 조림(산림재해방지조림) 시 10% 자부담 면제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종전환 방제 비용지원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쇄 : 경액 지급(25천 원/㎡) - 대용량 훈증 : 실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증약제, 피복재, 피복 보조재료 - 열처리 : 실비 지급(73천 원/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용재급 대상(직경 42cm, 재장 2.1m 이상)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와 재선충병 피해목의 산업적 이용으로 방제산물 처리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벌채산물 매각을 통해 산주에게 수익 환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시군별 산림부서와 사전협의의 必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재선충병 확산 저지와 기후변화를 대비한 산림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산림소유자에게 방제비용 지원 및 조림 시 자부담 비용을 면제합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등 변경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 (☎249-3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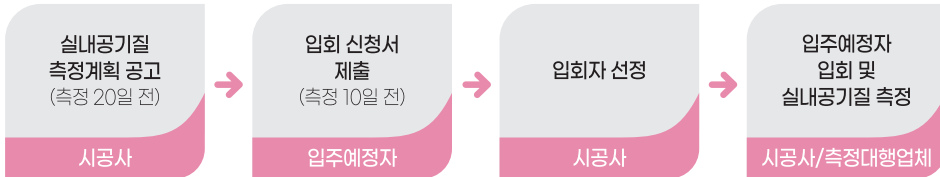
◦ 어떤 사업인가요?

- ▶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준공 전 실내공기질 측정·공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근거)「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없음) 장비 확보 시 누구나 실내 공기질 측정대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부여) 검증* 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검사 시행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 주관 실내공기질 측정 후 입주 게시판 등에 검사결과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절차 신설) 입주예정자 입회 측정 추가(아래 참조)

※ 측정절차 추가(신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결과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준공예정 건축물 적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2024. 2. 17)

신축 공동주택 환경유해물질 발생여부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방식을 입주자가 참여·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환경정책과 오염원배출관리팀 (☎249-2243)

◦ 어떤 사업인가요?

-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선정방식) 신고대상 중 구조물 관리가 양호하여 방지시설 설치 시 저감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 위주

* 환경부 시범사업 공모 : 18개소, 72억 원(국비 36, 지방비 29, 자부담 7), 4억 원/개소 내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미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사업장은 (대상 추가)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지원 가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축산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 저감으로 악취 및 대기환경 개선

◦ 어떻게 진행되나요?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 ~ 2월(공모 선정 시 시군 별도 공고)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사업장에 악취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수질보전과 하수관리팀 (☎249-3524)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란?

- ▶ 각 지역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폐자원량’을 기준으로, 처리의무가 있는 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

공공 의무생산자	민간 의무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대상) 도내 18개 시장·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내 유기성 폐자원처리 의무책임이 있는 지자체장 ▪ (시행시기) 2025년 ▪ (생산목표) '25년 50% → '50년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대상) 3개 해당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음식물폐기물 대규모 배출·처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축분뇨배출자(3년 평균 2만5천두/월 이상 돼지사육) ② 가축분뇨처리자(200톤/일 이상 국고지원시설) ③ 음식물폐기물배출자(3년 평균 1천톤/년 이상) ▪ (시행시기) 2026년 ▪ (생산목표) '25년(미시행) → '26년 10% → '50년 80%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이행방법

- (직접생산) 직접·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스 생산
- (위탁생산) 유기성 폐자원을 타 시설에 위탁처리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 (실적거래)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가스 생산 권고(자율) → 미이행시 불이익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생산목표제 시행) → 생산목표 미달(미이행)시 과징금 부과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로 친환경 경제가치 창출
 - (환경적)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한 2차 환경오염(악취, 불법투기 등) 예방
 - (경제적) 바이오가스 생산·판매,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공공부문은 2025년부터, 민간부문은 2026년부터 시행

“유기성 폐기물(폐자원)”배출(처리)자 → “바이오가스”생산 의무 부여
 - 가축분뇨,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 배출자(처리 책임자)의 ‘바이오가스’생산을 유도합니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협업사업 추진

산불방지센터 예방대책실 (☎649-8518)

◦ 어떤 사업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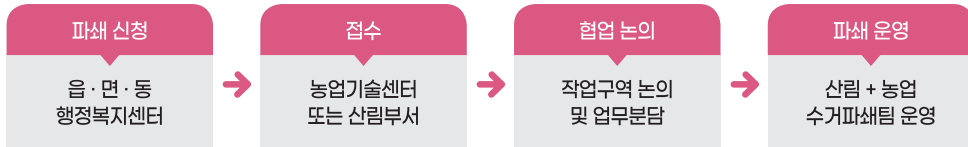
- ▶ 관습적인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근절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산림 + 농업 부서간 협업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 ▶ 사업지원 및 운영방식
 - (파쇄우선지역) ① 산림연접지(100m 이내) ② 고령층·취약층 ③ 이외 농경지
 - (수거방안) 개별 파쇄신청 농가 수거 독려 및 의무화하고 마을 단위 파쇄 지원시 마을(이장, 산림부서) 수거 요청
 - (파쇄작물) 과수(사과, 배, 포도 등), 고춧대, 참깨, 들깨 등 이외 시군별 여건에 따른 파쇄작물 선정 자율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제거
-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거·파쇄 신청접수



※ 시군별 여건에 따라 운영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부터 신청 및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영농부산물 처리협업을 통하여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기여합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시행

농촌자원과 농촌활력팀 (☎248-6135)

◦ 어떤 제도인가요?

- ▶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마을 중 우수한 시설을 선별하여,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시설마다 서비스 품질을 가늠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도 평가 통해 선정된 치유농장(마을)은 인증마크를 게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유서비스 제공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은 인증표시 사용, 인증 경영체 홍보 지원을 비롯해 치유농업 관련 시범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운영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예정)

치유농업의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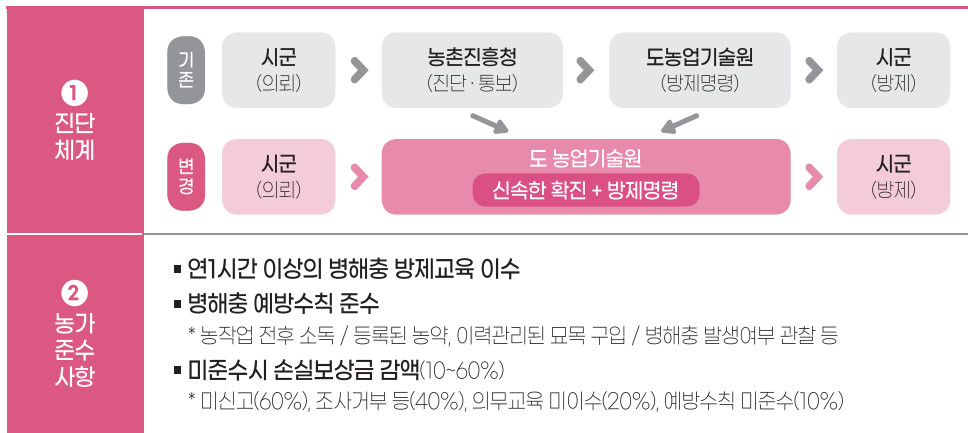
과수화상병 진단체계 개편 및 사전예방 강화

기술보급과 병해충대응팀 (☎248-6142~3)

◦ 어떤 사업인가요?

- ▶ 과수 화상병을 도에서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사전 예방수칙 준수 등 농가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조기진단 기능이 강화되어 과수 화상병 확산 최소화, 손실보상 규모가 점차 감소될 것입니다.
- ▶ 우리 도와 농업인이 상호 협력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2025년 1월(예정)



도에서 직접 과수화상병 의심시료를 진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병해충 확산 사전예방 수칙준수 등 농가의 의무사항이 강화됩니다.

종합검정실 상시운영 확대

농업환경연구과 토양환경연구팀 (☎248-6092)

◦ 어떤 사업인가요?

- ▶ **농가 맞춤형 시비처방을 위한 토양 및 퇴·액비 분석지원**
 - 분석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분석지원 항목 : 비료시비처방(8항목) / 퇴비·액비화(5항목)
 - * 비료시비처방 : 8항목(pH, EC,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고도, 규산)
 - * 퇴비화/액비화 : 5항목(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부숙도)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16시군 농업기술센터 운영 * 동해·속초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시군 운영 *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신설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 미부속 퇴·액비 배출을 차단하여 건전한 농업환경 유지
- ▶ 토양검정을 통한 비료 시비처방서 발급으로 맞춤 시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토양 및 퇴·액비 시료 지참)
 - 경지면적 1,000㎡ 이상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 시군별 조건 상이(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 17개 시군 분석지원 확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퇴·액비화 및 토양분석 상시 지원을 통한
건전한 농업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2025
달라지는
사업·제도
POLICY CHANGE FOR 2025